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979
----------	-----

제출년월일 : 2000년 9월 15일

발 의 자 : 장윤영 원외 9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2000. 7. 1)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종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총선 및 2년마다 상임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감사 부실 등의 우려가 있어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할수 있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할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를 7월·8월에 집회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안 제4조 제1호의 단서)
- 나. 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매년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안 제4조 제2호)
- 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성남시조례 제 호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7월·8월중”을“9월·10월중”으로 한다

제4조 제2호중 “12월5일”을“11월25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에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대 비 표

현행	개정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 한다.	제4조(집회)----- -----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	1.----- ----- -----9월·10월중-----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 한다	2.-----11월25일----- -----
제5조(심의)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심의)①----- 법 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 -----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 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 -----